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2
----------	-----

제출년월일 : 2017. 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함

### ○ 조례안 제1조

- “이 조례는 평창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명 변경에 따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서 사용되는 그 인용 문구를 변경하고, “귀농어업인”, “귀촌인” 등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 제2조제1호 농어업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
  - 제2조제2호 농업인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
  - 제2조제4호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
  - 제2조제5호 귀촌인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

다.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제3조에 따른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구성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3조제2항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개정
- 조례안 제3조제4항
  - “간사는 인력육성담당 주사로 한다.”를  
“간사는 귀농귀촌담당으로 한다.”로 개정

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

- 조례안 제4조제1호
  -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를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로 개정
- 조례안 제4조제2호
  -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를  
“귀농·귀촌인 지원 대상 및 사업계획 심의”로 개정

마.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

- 조례안 제5조제2항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

바.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조례안 제7조제3항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로 개정

사.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과 관련된 사항

○ 조례안 제10조제1호

-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을

“귀농·귀촌인의 농업창업 지원”으로 개정

○ 조례안 제10조제6호

-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별첨\_일부발취)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별첨\_일부발취)

3)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별첨\_일부발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4. 25. ~ 5. 18.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검토완료(행정규제 아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 사항 일부 반영

- 귀촌인의 정의에서 직업 유무 삭제 : 반영

-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및 여성농업인 참여 명시 : 미반영

\*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됨, 양성평등 참여가 실행되도록 추진.

- 지원범위에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추가 : 미반영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의 귀농·귀촌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개정사항으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어렵고 포괄적임, 또한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 제6호에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으로 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서로 뽑는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력육성담당 주사”를 “귀농귀촌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귀농·귀촌인 유치

제4조제2호 중 “자격”을 “귀농·귀촌인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귀농·귀촌인의 농업창업 지원

제10조제6호 중 “필요한”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p> <p>3. (생략)</p> <p>4. “귀농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평창군</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평창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 ----- ----.</p> <p>1.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평</p>

(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전입(이하 “전입“ 이라 한다)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자로써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귀농·귀촌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

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으로 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호선(互選)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귀농귀촌담당으-----.

제4조(위원회의 기능) -----  
-----  
-----.

1. 귀농·귀촌인 유치 -----



획 심의

2.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 5. (생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략)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 5. (생략)

6.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귀농·귀촌인 지원 대상 --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  
-----.

제10조(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의 농업창업 지원

2. ~ 5. (현행과 같음)

6. -----  
-----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

# 관계법령 발취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3383호, 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 ■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전 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연락처	(033) 330 - 1304